

수원지방법원 2021. 12. 9 선고 2020나95709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]

재판경과

수원지방법원 2021. 12. 9 선고 2020나95709 판결

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. 11. 13 선고 2020가단208163 판결

전 문

원고, 피항소인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우

담당변호사 육근환, 정동현

피고, 항소인 B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(유한) 강남

담당변호사 이정호

변 론 종 결 2021. 10. 28.

판 결 선 고 2021. 12. 9.

제1 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. 11. 13. 선고 2020가단208163 판결

주 문

1.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 청구취지

피고는 원고에게,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,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를 인도하라.

2. 항소취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,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의 피고 본인신문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.

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.

2.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

○ 제1심판결문 제3쪽 하단 제3행의 “앞서 든 증거” 뒤에 “,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피고 본인신문결과”를 추가한다.

○ 제1심판결문 제4쪽 제2~7행의 “위 토지사용승낙을 받은 D은 ..(중략).. 필요가 없다고 보이는 점”을 “위 토지사용승낙 당시 D은 이 사건 토지의 매수를 원하였으나 C이 이를 거절하여 위 토지사용승낙서가 작성되었고, 원고가 2019. 10.경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요구하자 피고가 2019. 11.경 이 사건 토지의 매입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히는 등 피고 측에서 이 사건 토지의

사용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”으로 고친다.

○ 제1심판결문 제4쪽 제12행 “증거가 없는 점” 뒤에 “, 피고가 이 법원의 본인신문과정에서 원고가 요구하는 경우 이 사건 토지를 돌려줄 수도 있다는 취지로 답변한 점”을 추가한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
재판장 판사 이효진, 판사 이국현, 판사 김광진

부동산목록

1. 경기도 하남시
[도로명주소] 경기도 하남시
연와조 스타브 지붕 단층주택 및 근린생활시설
지하층 78.54㎡
1층 99.99㎡ (1층 내역 : 78.54㎡ 주택, 21.45㎡ 근린생활시설)
2. 경기도 하남시 전 242㎡

